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2254
--------	--------	------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전홍배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토론회 등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8조)
- 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1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방식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

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 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운영은 개최자인 해당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담당한다.

③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최되는 토론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실 및 제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지급) 토론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 중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 등 활동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2. 신청 내용

행사명	
목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주요내용	

☐ 첨부서류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장 귀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2022. 2. 28. 일부개정·시행]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2019. 5. 30. 제정·시행]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연구 등 활동비 집행 등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받은 연구 등 활동비 범위에서 그 연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 연구 등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등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등 활동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등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등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